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10. 12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환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진료서비스를 위해 병원장의 자격 연령 상한선을 두고, 병원장의 전문의 자격요건 항목을 추가토록 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단, 병원장의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하고,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, 내과, 외과, 정형외과, 정신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

3. 참고사항

-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의료법」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병원장의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하고,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, 내과, 외과, 정형외과, 정신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병원을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 1. 생략 2. 생략 3. 의료법인의 「민법」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 (단,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)	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 1. 현행과 같음 2. 현행과 같음 3. ----- ----- ----- ----- (단, 병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, 내과, 외과, 정신과,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)	제4조(설치 및 운영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 1. 현행과 같음 2. 현행과 같음 3. ----- ----- ----- ----- (단, 병원장의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이거나, 내과, 외과, 정형외과, 정신과,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”를 “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”을 “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단, 병원장의 연령을 만65세 이하로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거나, 내과, 외과, 정형외과, 정신과, 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의료기관 운영 또는 병원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